

##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

###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1. 1. 8(금), 13:00 ~ 15:10
- ▣ 장 소 : 대구청사 회의실(구공관)
- ▣ 출석위원 : 정명섭, 김동영, 김찬영, 변숙현, 이성규, 이수환 이우석, 이형숙, 정민호, 정연상, 하헌정 (이상 11명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경상북도 문화유산과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	도지정문화재(주변) 현상변경허가	김천 서부리 삼층석탑 주변 공장 신축	(공개)
2	“	안동 토계동 계남고택 등 5 주변 짚라인 스포츠 시설 설치	(공개)
3	“	군위 화본동 오층석탑 주변 입목벌채	(공개)
4	“	군위 양암정 주변 내의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	(공개)
5	“	영해 주곡대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	(공개)
6	“	청도 범곡리 지석묘군 주변 국도20호선 확장 공사	(공개)
7	“	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	(공개)

## 【심의사항】

안건번호 건축-21-1-1

### 1. 김천 서부리 삼층석탑 주변 공장 신축

#### 가. 제안사항

김천시 개령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122호 「김천 서부리 삼층석탑」 주변 공장 신축을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김천시 개령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122호 「김천 서부리 삼층석탑」 주변 공장 신축이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김천 서부리 삼층석탑(문화재자료 제122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479-1번지 외 1필지
  - 사업내용 : 공장 신축
    - 건축면적/연면적 : 1,440.86㎡/1,512.88㎡
    - 주1동 : 공장, 일반철골조(판넬)/판넬, 1층, 높이 12.64m
    - 주2동 : 공장(사무실), 일반철골조(판넬)/싱글, 2층, 높이 8.2m

#### 라. 검토의견

- 건축물의 규모가 제2구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나, 문화재와의 사이에 저운 창고가 입지하고 있어 문화재와의 직접적인 시각적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 다만, 건축물 외장재 색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주변 건축물에 의해 상호조망은 되지 않으나,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 및 공통사항 조건을 초과하므로,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 - 건축물 외관의 색상 등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·보완 후 시행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## 2. 안동 토계동 계남고택 등 5 주변 짚라인 레포츠 시설 설치

### 가. 제안사항

안동시 성곡동 소재 민속자료 제8호 「안동 토계동 계남고택」 등 5 주변 짚라인 레포츠 시설 설치를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안동시 성곡동 소재 민속자료 제8호 「안동 토계동 계남고택」 등 5 주변 짚라인 레포츠 시설 설치가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안동 토계동 계남고택(민속자료 제8호)/안동 의촌동 도토마리집(민속자료 제6호)/안동 사월동 초가 토담집(민속자료 제14호)/월영대(유형문화재 제22호)/선성현 객사(유형문화재 제29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안동시 성곡동 730-2/성곡동 산255-1/민속촌길 13/민속촌길 13/민속촌길 13
  - 사업내용 : 짚라인 레포츠 시설 설치
    - 짚라인 데크 8개소 설치
      - 철 구조물, 목재 데크, 최고높이 약 33m
      - 와이어 총 6개소, L=1,477m

### 라. 검토의견

-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 및 인근에 다양한 문화재가 집중해 있고, 이들 문화재의 경관 보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,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# 마. 의결사항

- 부결
  - 정적인 문화단지 내에 기계적·인위적 소음 등으로 인한 산만한 분위기 조성 우려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부결 11명

### 3. 군위 화본동 오층석탑 주변 입목벌채

#### 가. 제안사항

군위군 산성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186호 「군위 화본동 오층석탑」 주변 입목벌채를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제안사유

- 군위군 산성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186호 「군위 화본동 오층석탑」 주변 입목벌채가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군위 화본동 오층석탑 (문화재자료 제186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 산 85-2
  - 사업내용 : 입목 벌채
    - 신청면적 : 2ha
    - 벌채수량 : 벌기령에 다다른 리기다 소나무등 3,700본 전체벌채
    - 조림수량 : 벌채 후 가죽나무와 편백나무 3,000본 식재
    - 사업기간 : 산림사업신고 수리일 ~ 2021.12.31까지

#### 라. 검토의견

- 계획 면적(2ha) 산림 수종이 바뀌면 산림 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므로, 문화재 주변 경관의 변화 예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.
- 산의 정상과 능선이 파괴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능선의 산림은 20m 폭으로 남겨두고 아래 부분부터 벌채하도록 함.

#### 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 - 벌채구역을 조정하고, 조림 수종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존의 수종과 조화롭게 할 것.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## 4. 군위 양암정 주변 내의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

### 가. 제안사항

군위군 소보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216호 「양암정」 주변 내의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군위군 소보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216호 「양암정」 주변 내의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양암정(문화재자료 제216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668일원
  - 사업내용 : 내의 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(L= 544m, B=6m)
    - 토 공 : 흙깎기(토사):1,076.0m<sup>3</sup>, 흙깎기(리핑암):1,347.0m<sup>3</sup>, 흙깎기(발파암):1,255.0m<sup>3</sup>, 터파기:170.0m<sup>3</sup>, 되메우기:64.0m<sup>3</sup>
    - 배수공 : L형옹벽식 측구 L=446.0m H=1.0m , 배수관 L=163.0m 400mm~D600mm, 집수정 11개소
    - 구조물공 : L형옹벽 L=97.0m H=2.5~4.0m
    - 포장공 : 콘크리트포장 L=460.0m B=6.0(5.0)m
    - 사업기간 : 2021. 1 ~ 2021.12

### 라. 검토의견

- 위천변 정자인 당해 문화재의 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- 도로 확포장 공사로 문화재 인근의 옹벽 등의 설치로 인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현 도면으로 다고 곤란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에서 검토함.

### 마. 의결사항

- 보류
  -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 주변의 일정 구역을 보존·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재검토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보류 11명

## 5. 영덕 영해 주곡댁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영덕군 영해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393호 「영해 주곡댁」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영덕군 영해면 소재 문화재자료 제393호 「영해 주곡댁」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이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영해 주곡댁 (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93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영덕군 영해면 호지마을1길 11-2
  - 사업내용 : 근린생활시설 신축
    - 대지면적 : 724㎡
    - 건축면적/연면적 : 141.14㎡ / 137.14㎡
    - 건축구조 : 경량철골구조
    - 지    붕 : 경사지붕
    - 건축규모 : 지상 1층 (최고높이: 7.15m)

### 라. 검토의견

- 진입도로(대구방향, 화양방향)에서 당해 문화재의 경관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사료되어 설계 도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### 마. 의결사항

- 부결
  - 진입 경관 조망 저해 등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부결 11명

## 6. 청도 범곡리 지석묘군 주변 국도20호선 확포장 공사

### 가. 제안사항

청도군 화양읍 소재 기념물 제99호 「청도 범곡리 지석묘군」 주변 국도20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청도군 화양읍 소재 기념물 제99호 「청도 범곡리 지석묘군」 주변 국도20호선 확포장 공사가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청도 범곡리 지석묘군(기념물 제99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05번지 일원
  - 사업내용 : 국도 20호선 확포장 공사
    - 도로연장 : L=2.1km
    - 도로표준폭원 : B=9.0m(왕복2차로) ⇒ 25.5m(왕복4차로) 확장
    - 사업면적 : 73천㎡
    - 사업기간 : 착공일로부터 5년

### 라. 검토의견

- 사업 필요성을 보완하고 문화재 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역사문화환경 보호 대책을 수립
- 문화재청의 보존지역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시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통 소통과 배수계획 등을 고려한 도로 공사설계를 보완
- 현장에 설치될 각종 시설물(교통 부대시설, 안내판 등)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완
-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
  - 종합적인 상세 시발굴조사 계획, 사업의 필요성 및 진동에 대한 문화재 보호 대책, 현장 설치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
- 기존 도로 공사설계도서 및 문화재 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시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착공 전 선행 필요
- 사업의 필요성 보완 및 문화재 보호 대책 수립
- 현장 설치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계획 보완

### 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 - 시발굴조사 선행 후 결과에 따라 재검토(사업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완)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

## 7. 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

### 가. 제안사항

예천군 용궁면 소재 민속문화재 제82호 「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」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“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”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예천군 용궁면 소재 민속문화재 제82호 「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」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문화재(주변) 보존·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# 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예천 상금곡리 추원재 및 사당(민속문화재 제82호)
- (3) 신청내용
  - 사업위치 : 예천군 용궁면 금당실길 127
  - 사업내용 : 단독주택 신축
    - A동(단독주택)
      - 지상1층, 철근콘크리트구조, 최고높이 5.01m, 경사지붕, 연면적 100.20㎡
    - B동(창고)
      - 지상1층, 경량철골구조, 최고높이 2.95m, 평지붕, 연면적 17.02㎡

### 라. 검토의견

-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건으로, 당해 문화재 전방에 있어 본체의 벽체 디자인 블록, 스타코, 외장재 변경, 부속동은 컨테이너 설치 불가(지붕 및 외장 마감 필요) 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함.
- 본 신축건물은 기존 문화재와 인접 거리에 있으면서 정면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.

### 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 가결
  - 건축물 배치, 외관, 색상, 높이 등 관계전문가 현장조사 자문을 받아 도면을 수정·보완 후 시행
- 의결정족사항
  - 출석 11명 / 조건부 가결 11명